

고발 방법

본인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고용주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뉴욕주 인권 분과(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인권법(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은 직원을 4명 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고발 양식은 반드시 해당 차별 행동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분과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2009년 7월 7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고용주 행동과 관련해 보호를 받습니다.

고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보거나 고발 양식을 제출하시려면, 본인 거주지 또는 고용지에서 가까운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본 분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예:

당신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라서 보호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보호 명령을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해당 가해자가 직장에서 당신을 괴롭히려 시도할까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고용주는 여러분을 해고시킬 수 있을까요?

고용주가 여러분이 가정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보호 명령, 또는 해당 가해자가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도 포함됩니다. 해당 가해자가 보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장에 찾아와 괴롭히는 경우, 직장에서는 다른 누가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당신이 가정 폭력 때문에 법원에 출두하거나, 이사하거나 또는 도움을 얻기 위해 근무를 쉬겠다고 요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고용주는 개인적인 용무가 있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면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가정 폭력 때문에 당신이 근무를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근무를 쉬겠다고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럴 때 구제책이 있을까요?

직원이 가정 폭력 피해자라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일체의 직원 규정, 조건 또는 특권과 관련해 다른 직원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신이 가정 폭력 때문에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치료를 받아야 해서 근무를 쉬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기 위한 휴가는 인권법의 장애 및 합리적인 편의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휴가가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직원에게 타당한 휴가를 허락해야 하며, 그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유사하나 가정 폭력과 무관한 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 이 경우에도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의 직장 권리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ANDREW M. CUOMO, GOVERNOR

ONE FORDHAM PLAZA
BRONX, NEW YORK 10458
(718) 741-8400

WWW.DHR.NY.GOV

가정 폭력 피해자의 직장 권리

2009년 7월 7일에 발효된 뉴욕주 인권법 개정 조항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고용주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뉴욕주 인권법은 뉴욕주 가정 법원법(N.Y. Family Court Act) §812에 의거, 가정 폭력 피해자를 가족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의 피해자인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승진, 휴무 시간 사용 요청, 또는 그 외 고용 규정, 조건 또는 특혜와 관련해 가정 폭력 피해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차별 행위에 대해 고소 양식을 제출한 데 대해 고용주가 보복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공공 정책

이러한 각종 고용 관련 권리들은 고용과 관련한 차별로부터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에 따라 그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고 가해자로부터 재정적 자립을 성취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뉴욕주의 공공 정책을 한층 더 진전시킵니다.

자세한 정보

가정 폭력 피해자와 고용주가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의처: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뉴욕주 가정 폭력 방지실)
(518) 457-5800
www.opdv.state.ny.us

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뉴욕주 가정 폭력 퇴치 연합)
(800) 942-6906
www.nyscadv.org

NYS Spanish Domestic Violence Hotline(뉴욕주 스페인어 가정 폭력 핫라인)
(800) 942-6908
www.vipmujeres.org

Employment Rights for Survivors of Abuse(ERSA: 폭력 생존자의 고용 권리)
무료로 직장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해 주는 전국 차원 프로젝트입니다.
(212) 925-6635
www.legalmomentum.org

가까운 가정 폭력 피해자 서비스는 아래 인터넷 디렉토리를 참조하십시오:
nyscadv.org/directory.htm
또는 위에 열거된 800 신고 번호를 이용하십시오.

거주

치료를 위한 휴무.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해 근무를 쉬어야 하는 가정 폭력 피해자는 인권법(Human Rights Law)의 장애 및 정당한 편의 조항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본 분과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는 FMLA(Family Medical Leave Act: 가족 의료 휴가법) 및 기타 장애 관련법에 따른 권리가 있으나, 이 법들은 본 분과에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기타 휴무.

뉴욕주 형법(N.Y. Penal Law) 제 215.14조에 의거, 가정 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거나, 담당 검사와 상의하거나, 또는 보호 명령을 받기 위해 근무를 쉬는 데 대해 고용주가 일체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례에 따른 구체적 권리는 본 분과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 피해자를 다른 이유로 휴무하고자 하는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인권법에 따라 차별로 간주됩니다.

실업자 급여.

가정 폭력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반드시 실업자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주 노동법 제 593조에 의거, 가정 폭력과 관련된 상황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 폭력과 관련한 업무 성과에 문제(결근 또는 지각 문제 등)가 있다고 해서 꼭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